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04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.

발 의 자: 강기윤·추경호·태영호

전봉민 • 박성중 • 백종헌

최형두 • 서병수 • 성일종

윤주경 · 김희국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('20.9.12)에 따라 감염병연구개발(R&D)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·백신·치료제 개발 등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·치료제·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 관련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시험·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제8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6(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있다.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·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·사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법」 제5조를 준용한다.
-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·분석을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시험·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조의6(감염병 연구개발 지원
	등)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
	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위하여 감
	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·
	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
	업을 추진할 수 있다. 이 경우
	<u> 질병관리청장은 연구개발사업</u>
	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
	위 내에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
	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
	<u>할 수 있다.</u>
	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
	른 조사·연구를 위하여 「국가
	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제4호
	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
	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문기
	관의 지정・운영・해제 등에 관
	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	<u>로 정한다.</u>
	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
	급·사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
	사항은 「보건의료기술 진흥
	법」 제5조를 준용한다.
	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치료

제·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염병 치료제·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·분석을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시험·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